

		2020. 08. 27. (목) <b>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</b>		
<b>자치경찰단</b>	<b>보 도 자 료</b> PRESS RELEASE	수사과장	진정일	710-6523
		담 당 자	고원혁	710-6289
		담 당 자	한성찬	710-8913
동영상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**‘불법야간파티’ 행위 적발 청정제주 코로나-19 확산 차단**  
 -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 무허가 무도 유흥주점 운영자 등 적발 -

□ 제주도 자치경찰단(단장 고창경)은

- 코로나-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‘불법 야간파티’ 행위 차단을 위하여 지난 8. 14. ~ 24일 어간 자치경찰단과 시 위생관리과 합동으로 도내 1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, 불법 무도 유흥주점 운영자 1명을 입건하고 영업장의 영업행위 등 5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27일 밝혔다.
-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“야간파티” 를 하여 코로나-19 확산이 농후한 업소에 대하여 주말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시행하였고,
- 적발된 업소 중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특수조명시설 및 무대를 갖춘 후 손님들에게 입장료 12,000원을 받고 DJ부스에서 DJing을 하는 무허가 클럽 무도유흥주점 업소와 실내포차에서 미러볼 등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업소가 있어 이들 2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.

-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코로나-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적발,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며, 보건복지여성국, 시 위생관리과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도 펼칠 예정” 이라고 밝혔다.

※ 위반 법률

식품위생법 제94조, 제37조 : 10년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
식품위생법 제98조, 제44조 : 3년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
- ※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(보도사유 : 동종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방지)

## 현 장 사 진



- DJ부스, 조명시설(레이저, 미러볼 등), 무대시설을 갖춘 상태에서
- DJing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며,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무대시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전형적인 나이트 클럽 형태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 임.